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403
- 발 의 자 : 장상기 의원(찬성자 14명)
- 발 의 일 : 2019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등 구체적 기능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등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축될 수 있음. 더욱이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의 경우 상위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규칙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2. ~ 2. 1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사항 등 구체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공유재산법」 제11조1)는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폐지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행정자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 법 제16조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3)에서는 시행령 규정 외의 사항은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본 조례 제4조4)에서는 심의회 구성·운영 및 업무 사항을 규정 하면서 제7항에서는 그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6조제2항제4호5)에 일부 행정재산(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등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에 따라 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시행 2006. 5. 4.) 및 규칙(시행 2006.7.19.)에 제정 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현행 조례에는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이를 규칙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재무국에서는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에 일부분 심의 생략 가능토록 규정.

< 최근 4년간 규칙에 따른 심의회 심의 생략 현황 > (단위 : 건)

연 도	계	2015	2016	2017	2018
용도변경	31	9	9	8	5
용도폐지	54	5	15	28	6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⑦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3호(생략)

4. 다음 각 목의 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안 제4조)은 현행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현행 법령의 위임 사항을 넘어선 규정(조례, 규칙)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중 제1항제6호의 ‘재심의’ 사안과, 제2항제4호의 가목 및 나목으로 규정한 용도변경·용도폐지 생략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그대로 규정되었음.

< 조례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 정 안
조례	규칙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⑥ (생략) ⑦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회 운영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신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

현	행	개 정 안
조례	규칙	조례
	<p>(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p> <p>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p> <p>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p> <p>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른 재심의</p> <p>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p> <p>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p> <p>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p> <p>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p> <p>5.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p> <p>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p> <p>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p>

현	행	개 정 안
조례	규칙	조례
	<p>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p> <p>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p> <p>4. 다음 각 목의 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p> <p>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p> <p>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p>	<p>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p> <p>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p> <p>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